

## VI. 결론

지금까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의 제안취지 중의 하나인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가교 역할 수행과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에 필요한 세제차원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의 퇴직일시금제도와 퇴직연금관련 세제를 급부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둘째,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의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세제체계와의 차이점 및 퇴직급여 관련세제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Simulation기법을 통해 퇴직급여 급부단계 세액과 적용한계세율을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앞서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퇴직소득세제와 퇴직연금 소득세제를 비교한 결과, 퇴직일시금 세제혜택이 큰 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연 6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공제액이 낮아서 퇴직연금 전환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주요 외국의 세제체계와 우리나라의 체계를 비교한 결과, 미국과 영국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영국은 비과세 일시금을 전 계층에게 허용하지만, 미국의 경우 일시금 및 연금소득 경감혜택을 특정 자격자에게만 주고 있다.

셋째, Simulation 추정결과 중 소득계층별 Simulation 결과에 따르면, 연금의 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액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연금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급부기간

을 장기간으로 가져갈 유인이 일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Simulation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액보다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크게 추정되었다. 개인퇴직계좌(IRA) 역시 전반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결과를 종합하면, 젊은 계층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할 유인이 일부 있지만, 대기업소속 근로자, 고임금 근로소득자, 그리고 장기근속자일 경우 연금소득세액이 전반적으로 퇴직소득세액보다 높아서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퇴직연금세제 개정의 기본방향을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가교연금으로 기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세부 방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연금소득을 퇴직금과 같이 종합과세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방안은 퇴직연금이 가교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설령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 간주하더라도,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현재의 절반수준인 20~30% 정도로 축소해도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는 제고될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퇴직연금 연간 수급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상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시켜 과세하는 방안은 퇴직소득성격에 충실한 적용방법일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제제도로 인해 현행 연금소득세액보다는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금소득 공제금액 인상방안은 근속연수가 16년 미만인 근로자이면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보다 낮아지지만, 16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이면 반대로 나타나서 가교연금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금소득의 50%를 공제해 주는 연금소득비례공제를 신설할 경

우,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일시금의 소득세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져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충분하였다.

다섯째, 퇴직연금수령자들의 지출 중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공제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여섯째, 연금소득을 퇴직금과 같이 종합과세에서 배제하는 방안인데, 이는 외국의 세제체계 중 비과세 일시금과 과세대상 연금의 혼합 체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영국제도를 수용한 방안이다. 이 경우 연금수급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금소득세액과 퇴직소득세액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는 구간까지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공히 유사한 소득세액이 산출되었다.

일곱째, 위와 같은 퇴직관련소득 일원화 방안에서는 퇴직연금적립금액 중 비과세되는 부분에 한해 퇴직일시금 지급방안도 고려해본 결과 퇴직일시금보다는 전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세액 계산시 퇴직연금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각 출단계의 세제도 현행 수준이 유지되어 기업입장에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퇴직연금이외에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까지도 반영한 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법인세법상의 기업들의 퇴직연금 각출금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종업원이 각출할 경우의 추가적인 세제혜택문제와 연금과세 상의 차이점 등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